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9년 3월호

### 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나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

### 2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다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- 라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

## 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나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

## 1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2/21 개정·2019/4/15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환매조건부채권매매(Repo)의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매매 거래시간을 연장하고, 거래대상채권 지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Repo 신고매매 거래시간 연장(76조 2항 4호)
  - Repo시장 참가자의 거래기회 확대를 위해 Repo신고매매의 장 종료시간을 10분 연장
    - (기존) 15시 30분 → (개정) 15시 40분
- Repo 거래대상채권 지정요건 완화(87조 1호)
  - Repo시장 참가자의 보유채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epo거래대상 채권 지정요건 중 미상환액면총액 2,000억원 이상 요건을 폐지

### 나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2019/2/15 개정·2019/2/18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(CCP)의 전문성·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'증거금률 조정 심의회' 운영 관련 업무분장을 반영하기 위함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2) 주요 내용

-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 위원장은 CCP리스크책임자 (CCP CRO)로 함(23조 2항 1호)
  - (기존) 청산결제 업무 담당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 → (개정) CCP리스크관리담당 본부장보 또는 전문위원
  
- 거래소 내규 정비방안(2018.11.2)에 따라 '기준'을 '지침'으로 개정(1조 및 2조)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## 2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다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- 라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

## 2. 금융투자협회\*

### 가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2019/2/8 개정·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준법감시인의 심의대상에서 감사위원회 부의 안건을 제외하고,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헷지 목적 확인의무를 명시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·부당행위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준법감시체제의 구축·운영을 의무화(18조 1항)
  -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요구를 준법감시체제의 필수적 기능으로 명시
- 경영진의 지시를 받는 준법감시인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감사위원회 부의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
  - (기존)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요함
  - (개정) 준법감시인의 심의대상에서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을 제외(18조 2항 3호)
    - 은행권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대상에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(은행 표준내부통제기준 19조)
-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·주선하는 경우 거래목적(위험회피) 등의 확인의무 명시(38조 의5)
  -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지 여부
  - 장외파생거래로 인한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 가능한 손익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19/2/15, 2019/2/20 개정·2019/2/28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외국국채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에 포함됨에 따라, 외화 대고객조건부매매에 관한 사항을 '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' 보고 서식에 추가하기 위함
  - 금융투자업규정 5-18조 등 개정(2018.12.6.)에 따라 외국국채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에 포함됨
- 소규모 펀드 비율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율현황 공시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동일한 공시목적의 서식을 준용하기 위해 소규모펀드 공시를 동일한 서식으로 변경하기 위함
  - 금융위원회가 '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기준'을 개정(2019.2.5. 시행)함에 따라 소규모 펀드 비율현황 공시서식이 변경

### 2) 주요 내용

- 별지 31호 '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'에 외화 조건부 매도·매수 잔고 등 신설
- 소규모펀드 공시 서식 및 전산파일 작성양식 변경(별지 8호)
  - 11호 서식인 '소규모펀드 비율 공시'의 소규모펀드 비율공시 서식 및 전산파일 작성양식을 변경된 모범기준 기준으로 반영

## 다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(2019/2/21 개정·2019/2/22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자문·일임업의 상품별 등록단위가 통합됨에 따라 자문·일임업 등록요건인 투자권유자문인력·투자운용인력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  - 2019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문·일임업 등록단위 개편

## 개편 후 자문·일임업 등록단위

금융투자업	취급상품	투자자	최저자기자본	비고
투자자문업	증권, 파생상품, 시행령(6조의2)에 따른 모든 투자대상자산	일반·전문	2.5억원	7개단위→2개단위
	집합투자증권, 파생결합증권, 환매조건부매매, 예치금, 채무증권	일반·전문	1억원	
투자일임업	증권, 파생상품, 시행령(6조의2)에 따른 모든 투자대상자산	일반·전문	15억원	6개단위→2개단위
		전문	5억원	

## 2) 주요 내용

- 자문·일임업 등록요건으로 증권 자문·일임 인력 자격을 요구하되,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자문·일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자문·일임 인력 요건을 추가로 요구
  - 부동산 관련 교육 또는 경력 추가 구비(2-10조)
  - 기존 규정의 인력요건과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며, 개편된 등록단위에 따라 조문을 정비(2-11조)

## 라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(2019/2/21 개정·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19.1.15)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투자자의 충분한 투자검토 환경 마련
  - 청약 전 일반투자자 대상 투자 적합성 확인 의무(시행령 68조 5항 13의5)
    -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, 불합격시 청약을 제한
  -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청약기간 도입(시행령 118조의16 3항 1의2)
    -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설정
  - 중요사항 변경시 고지 강화(시행령 68조 5항 13의4)
    -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 통지 및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
  - 발행요건 달성시 통지 의무(시행령 68조 5항 13의6)
    -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% 이상인 경우 청약자 통지 의무화
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 발행한도 확대 및 공시 강화
  - 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(시행령 118조의15 1항)
  - 발행인의 공시사항 추가(시행령 118조의16 1항)
    -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·근거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추가
    - 연간 10억원 이상 모집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공시의무 부과
  
- 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
  -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상향(시행령 118조의17 4항)
    -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: (기존) 200만원 → (개정) 500만원
    - 최근 1년간 총 누적투자금액 : (기존) 500만원 → (개정) 1,000만원
  -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(시행령 118조의17 3항)
    - 크라우드펀딩에 최근 2년간 5회 이상 투자한 자로서 누적 투자금액이 1,500만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적격 투자자로 인정(부칙 4조에 따라 2019.12.31.까지는 1,000만원으로 적용)
    - 금융투자전문인력(등록 후 3년 이상 경과)을 적격투자자로 인정
  
-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 확대
  - (기존)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 가능
  - (개정)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개업자·발행인의 명칭,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허용(법 117조의9 1항)
  
-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개선
  - 인별·회사별 제공한도 폐지 및 공시의무 신설
    - (기존)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투자자·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시, 인별·회사별 연간한도 준수 의무화
    - (개정)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여 금전·물품·편익 등을 제공·수령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(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-65조)
  -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(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-67조)
    -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재산상 이익 제공현황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
  
- 전매제한기간 단축
  -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전매제한기간 단축(법 117조의10)
    - (기존) 1년 → (개정) 6개월

□ 발행인의 발행종료 후 정보 게재 보완

-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(법 117조의10 2항, 시행령 118조의16 3항)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